

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7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민 대상 수어인구 확대를 위한 수어교육 지원 사업으로 2018년 12월 31일자로 협약 만료됨.(’16.1.1.~’18.12.31.)
- 나. 서울시민 대상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수어교육 운영으로 수어에 대한 이해 확대와 공인수어통역사 및 전문수어통역사 양성으로 농아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하고자 수어교육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, 농아인들의 자립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수행 필요.
- 다.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및 부칙 제2조(제6567호, 2017.7.13.)에 의거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근거
 - 장애인복지법 제22조(정보에의 접근), 제71조(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)
 -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나. 대상사무

기관명	소재지	현 운영법인	총 위탁기간 (위탁횟수)	위탁기간 (위탁횟수)	위탁금 (백만원)
서울수어전문 교육원	서대문구 경기대로 15엘림넷 5층	사)한국농아인 협회 서울시협회	'09.4.13.~ '18.12.31. (5회)	'19.1.1.~ '21.12.31. (6회)	533('18년)

- 위탁기간 : 3년 (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2항)
- 위탁범위 : 사무운영, 부동산,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
- 위탁사무
 - 전문수어교육으로 공인수어통역사 양성
 - 전문영역 강의를 통한 수어통역사 역량강화
 - 청각장애인 강사와의 만남을 통한 장애인식개선
 - 수어를 배우고자하는 일반 시민 교육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

※ 작성자 :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팀 (☎ 2133-7462)